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17 선고 2020재가합2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0. 11. 12.

판결 선고 2020. 12. 17.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14. 선고 2019가합1210, 2019가 합1241(병합),
2019가합1258(병합), 2020가합15(병합)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1)에게 안산시 상록구 C 대 3,914.1㎡(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2]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 12. 31. 접수

제1648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법원 2003. 12.31. 접수 제1648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법원 2004. 1. 20. 접수 제56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법원 2004. 1. 20. 접수 제56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집합건물 "BV"(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2004. 5.24. 촉탁 소유권보존등기 경로,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처분행위에 따른 것으로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2004. 1. 20.)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 부분에 각 마쳐지기 전에 그 대지 지상에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각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2020. 5. 3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자신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개인적으로 알아본바, ① 이 사건 집합건물 최상층인 11층의 전기공사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2004. 1. 20.) 이전인 2003.10. 12.부터 2003. 12.

4.까지 진행하였음을 이 사건 집합건물 전기공사업체로 참여한 주식회사 BW의 작업일지를 확인하였고, ② 이 사건 집합건물 공사참여업체인 주식회사 BX가 이 사건 집합건물 배관 및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2003년 11월 중순경 마무리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③ 이 사건집합건물 시행사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2003. 12. 17.자로 이 사건 집합건물 BY호 및 BZ호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사완료가 임박하였으니,복층(다락방) 공사신청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④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재판 진행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 시행사 대표로부터 연락이나 메일을 받지 못하여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3. 판 단

확정된 중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인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는 이를테면 소송의 승패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문서의 절취·강탈 또는 손괴·반환거부로 제출이 방해된 경우, 증인을 체포·감금함으로써 출석할 수 없게 한 경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변론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1~4의 사유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한정적으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중호, 판사 김도형, 판사 양민주

[별지1]

선 정 자 명 단

1. A(선정당사자)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BA

26. BB

27. 주식회사 BC

28. BD

29. BE

30. 주식회사 BF

31. BG

32. BH

33. BI

34. BJ

35. BK

36. BL

37. BM

38. BN

39. BO

40. BP

41. BQ

42. BR

43. BS

44. BT

45. BU

끝.

[별지2]

지분목록

번호	집합건물 구분	대지권의 비율	소유권자
1		3914.1 분의 11.99	
2		3914.1 분의 12.93	
3		3914.1 분의 8.43	
4		3914.1 분의 8.95	
5		3914.1 분의 7.27	
6		3914.1 분의 7.27	
7		3914.1 분의 8.43	
8		3914.1 분의 8.43	
9		3914.1 분의 8.43	
10		3914.1 분의 8.43	
11		3914.1 분의 7.83	
12		3914.1 분의 7.27	
13		3914.1 분의 5.63	
14		3914.1 분의 7.27	
15		3914.1 분의 7.27	
16		3914.1 분의 8.43	
17		3914.1 분의 8.43	
18		3914.1 분의 7.83	
19		3914.1 분의 7.27	
20		3914.1 분의 7.27	
21		3914.1 분의 8.43	
22		3914.1 분의 8.43	
23		3914.1 분의 8.43	
24		3914.1 분의 8.95	
25		3914.1 분의 7.27	
26		3914.1 분의 7.83	
27		3914.1 분의 7.27	
28		3914.1 분의 8.43	
29		3914.1 분의 8.43	
30		3914.1 분의 8.43	
31		3914.1 분의 8.48	
32		3914.1 분의 7.27	
33		3914.1 분의 7.27	
34		3914.1 분의 8.43	
35		3914.1 분의 8.43	
36		3914.1 분의 8.43	
37		3914.1 분의 7.83	
38		3914.1 분의 5.78	
39		3914.1 분의 7.27	
40		3914.1 분의 8.43	
41		3914.1 분의 8.43	
42		3914.1 분의 8.43	
43		3914.1 분의 7.83	
44		3914.1 분의 7.75	
45		3914.1 분의 8.24	
46		3914.1 분의 7.27	
47		914.1 분의 16.86	

1) 재심대상판결에는 '및 선정자들' 부분이 없으나, [별지2]를 보면 위와 같이 누락된 오기임이 명백하다.